## 한국인터넷진흥원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지침

제정 2010. 9. 6. 개정 2012. 9. 24. 개정 2013. 8. 23. 개정 2013. 9. 1. 개정 2014.11. 4. 개정 2020. 8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 이라한다)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취약분야의 제도,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·시정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진흥원의 청렴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- 1. 변호사, 회계사,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2.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자
- 3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③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존ㆍ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.
- 1. 진흥원에 재직하였던 사람
- 2. 진흥원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
- 3.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
- 제3조(임기 및 신분보장) ①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<개 정 2013.8.23.> <개정 2020.8.28.>
  - ②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
  - 2.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

- 3.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제4조(직무수행 등)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1. 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,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관련 서류 열람,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·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<개정 2012. 9. 24>
  - 2.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<개정 2012. 9. 24>
  - 3.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·부당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시정·감사요 구 및 관련사항의 감사참여<신설 2012. 9. 24><개정 2013.8.23.>
  - 4. 청렴옴부즈만이 권고 처리한 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이행실태조사와 평가<신설 2012. 9. 24>
  - ② 청렴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2회(6월, 12월)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신설 2014.11.4.>
- 제5조(직무활동에서 제척) ① 청렴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에서 제척할 수 있다.
  - 1. 당해 모니터링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
  - 2.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
  - ② 청렴옴부즈만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모니터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 또는 기피신청이 가능하다.
- 제6조(자료의 제출요구) ①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제1항에 의한 자료를 요청받은 직원은 청렴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7조(자문비 지급) 원장은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

등에 따라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활동실적 제출) 청렴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원장에게 제출한다.

제9조(비밀준수) ①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중에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.

②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 부 칙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12. 9. 24>

이 지침은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<2013. 9. 1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9. 8. 28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제3조의 개정 조항을 적용한다.